

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!



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?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」 개정에 따라 '17.1.8 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, 주유소의 화재, 폭발,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.



+ 주유소 의무가입

-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



✓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1사고당 10억원 까지 보장

- 매출액 9~10억 기준, 연간보험료 95,000원
- 매출액 15~20억 기준, 연간보험료 131,000원
* 단,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주유소 이용객
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(사고당무한)
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 까지 보장
* 원인불명의 화재, 폭발, 붕괴 손해도 보장

📅 2017년 7월 7일 까지 가입해야

- 신규주유소 : 시설 사용 개시전 가입
- 2017년 1월 7일 이전 사용개시 된 주유소 : 2017년 7월 7일 까지 가입



⚖️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

-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* '17.12.31 까지 과태료 부과 예예

가입의무 위반 기간	과 태 료
30일 이하	30만원
30일 초과 60일 이하	30만원 +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
60일 초과	120만원 +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



특수건물이나 국·공유시설에 있는 주유소는 가입 제외

-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주유소

특수건물

아파트,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

-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가 있는 국·공유시설에 위치한 주유소
-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유소



자주 묻는 질문

- 화재·영업배상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,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?

보상한도* 및 담보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. 영업배상보험 유지 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,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.

* 화재·영업배상보험에서는 대인에 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,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무한

-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, '17.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데 왜 가입기한('17.7.7)내 가입해야 하나요?

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가 가입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,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*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합니다.

[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] 제9조(의무보험과의 관계)

-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.
-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"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"으로 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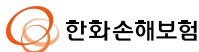


가입 문의전화

※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(☎02-3702-8500)로 전화주세요.



1566-7711



1566-8000

롯데손해보험

1588-3344



1688-1688



1588-5114



1588-5656



1544-0114



1588-0100



1566-3000



1644-9000

